

#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10. 3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,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함(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조 례 안 : 붙임
- 나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2010.2.11~3.3(20일간) -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「교통안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 및 운영)** ①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②교통업무담당부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분야 유관기관공무원 및 전문가를 「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」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22호에 관한 사항” 을 “제23호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 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.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교통안전법

### 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

-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도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“지역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

- ①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③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④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### 제8조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## □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

### 제2조(구성)

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·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3호 및 제22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·과·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⑤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